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[이인식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05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9. 5.

발 의 자 : 이인식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 의원

엄셋별 의원

1. 제안이유

장애인회관의 설치와 운용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장애인회관의 위치 및 시설(안 제2조 및 제3조)

다. 장애인회관의 사용(안 제4조 ~ 안 제7조)

라. 손해배상 및 운영위탁(안 제9조 및 제10조)

마. 지도점검 및 사용허가 취소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161조

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 및 제63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3. 9. 6. ~ 2023. 9. 12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금천구 관내로 한다.

제3조(시설)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무실, 회의실
2. 재활실, 상담실, 교육실
3.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

제4조(사용허가)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5조(사용허가 대상)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

각 호와 같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른 금천구 관내 장애인단체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제6조(사용의 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
2.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
3. 제4조제3항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

제7조(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양도금지)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
제9조(손해배상) 사용자는 회관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위탁) 구청장은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지도점검)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·점검

검할 수 있다.

제12조(사용허가 취소)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
2. 제11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
3.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[시행 2022. 12. 22.] [법률 제18625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

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63조(단체의 보호·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·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